##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372

발의연월일: 2021. 7. 7.

발 의 자:정점식·박덕흠·성일종

이 용・김용판・조수진

박대출 • 유경준 • 임이자

지성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고, 개발대상 섬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세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광산업과 농림·해양·수산업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 섬 지역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섬 개발 관련 사업계획에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안 제1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섬지역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농림·해양·수산업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 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 역에서 생산하는 특산물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의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납품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②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6의2. 섬지역 관광 활성화에 관한
	<u>사항</u>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제13조의2(농림·해양·수산업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섬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서 생산하는
	특산물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
	<u> 여야 한다.</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축산
	물・수산물의 공공기관(「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납품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